

제16회 목포시의회 제1차 회의록

(오 전)

1. 일 시:단기4286(1953)년 4월 10일 오전 10시

2. 장 소:의회의사당

3. 개회성립:

1) 참석의원:19명

유정두, 이복주, 명남철, 김삼성, 김남진, 이재홍, 진복춘, 임일남, 김팔용, 김경현,

문택호, 이문길, 정응표, 김길환, 김경희, 박찬규, 김자홍, 오세일, 김영완 의원

2) 불참의원:3명

이소규, 김채용 의원

4. 의사일정표:

1) 보고사항:

(1) 제15회 임시의회 회의록 낭독

(2) 전차 내무분과위원회 회의록

(3) 도양정과, 사세청 교섭경과 보고의 건

(4) 교육청 사무감사 보고의 건

2) 부의안건:

(1) 경진남부선 철도부설 공사 추진의 건 (회의도중 의장이 부의)

(2) 단기 4286(1953)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건

5. 개회선언

의장 유 정 두

(오전 10시)

1) 개 회 식

2) 국민의례

3) 의장인사

4) 폐 회 사

6. 보고사항

◇서기 박 찬 대

- 제15회 임시의회 회의록 낭독

◇의장 유 정 두

- 이의없으면 통과 하겠음
- 의원의 누락된 동의발언 삽입

◇서기 박 찬 대

- 전차 내무위원회 회의록 낭독
- 목포시 실정에 응분한 식량 및 사세행정에 관하여 도 양정과, 사세청 교섭결과 보고가 김삼성, 박찬규 의원으로부터 있었음 (속기록 참조)
- 춘궁기 타개용 맥강배급에 관한 조사 보고가 산업위원회 위원인 이재홍 의원으로부터 있었음 (내용 속기록 참조)

7. 토의안건

◇문 택 호 의원

- 항시 의외의 의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반 맥강배급에 관하여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견해에만 한해서 업자에게 부정배급이니, 약질적이니 육설을 하는 경솔한 의결을 하여 도에까지 건의한 것은 유감이다.
- 본 시장의 무계획적인 처사를 규명하고 싶다.
- 사태를 참작하여 전반 의결을 취소토록 변안동의할 것을 긴급동의
- 유정두 의장으로부터 본 동의는 의견정도로 해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의

원 동의 취소하고 의견으로 하계T라고 표명하였음

◇의장 유 정 두

- 교육청 사무 감사 보고를 하기 전에 경진선 철도부설 공사 폭진 건의 건을 부의하겠음

◇서기 박 찬 대

- 안건의 내용을 낭독

◇이 재 흥 의원

- 시급히 공사를 촉진토록 중앙 요로에 건의할 것을 동의(재청)

◎ 교육청 사무감사 보고의 건

◇정 응 표 의원

- 회계관계 감사보고가 별지 감사보고서와 여히 있었음 (생략)

◇김 남 진 의원

- 서무광계 감사보고가 별지 감사보고서와 여히 있었음 (생략)

◇의장 유 정 두

- 교육청 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총평이 있었음(속기록 참조)

◇김 남 진 의원

- 대성동 병원 앞에 피난민 수용소용으로 수도를 신설한 바 있었는데 바로 국도의 하수도 뜰에다 시설하였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러한 무계획적인 기술자라면 단연 규명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행정부의 답변을 요함.

◇총무과장 조 운 용

- 즉시 지시하여 약 3천가량 안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1층밖에 안들어간 점은 제가 고치도록 즉시 지시하겠다.

◇서기 박 찬 대

- 단기4286(1953)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 관한 내무위원회 회의록 낭독

◇의장 유 정 두

- 이의 없으면 본 예산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겠음

◎ 단기 4286(1953)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의의 건

◇김 자 흥 의원

-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관, 향, 목별로 설명

◇김 영 완 의원

- 현하 담세력이 없는 시민의 실정에 비추어 중앙국민학교 신영비예산을 금년만큼 보류할 것을 수정 동의하다.

- 재청, 3청, 4청, 5청, 6청까지 있었다.

◇김 삼 성 의원

- 이 문제는 장시간의 토의가 있을 것 같으니 중식을 마치고 계속하자 동의하다.

- 제청이 있어 표결결과 가결되다.

◇의장 유 정 두

- 휴회 선언하다.

(오전 12시 45분)

(오 후)

- 속회 선언하다.

(오후 2시 15분)

◇교육감 신 현 중

- 단기4286(1953)년도 시정연설이 약 20분간 있었음(내용 속기록 참조)

◇김 삼 성 의원

- 시장께서 조정하여 교육위원회 예산을 삭감했다는 설이 유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 답변을 요함

◇시장 하 동 현

- 그러한 일은 전혀 없으며, 이는 분열시키려는 일종의 모략이다.
- 질의 응답 약 20분간 있었음 (생략)

◇임 일 남 의원

- 교육행정은 제2세 양성을 위하는 것이며, 여유있는 예산을 주는 것이 좋으나 현하 처참한 시민생활의 실태와 퇴학생 속출이란 현실을 무시할수 없으므로 중앙교 신영비를 삭감할 것을 김영완 의원의 동의에 첨가.

◇이 복 주 의원

- 교육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나 전시니만큼 생각
아니 할 수 없다. (불균형적인 국민학교 신입생 취학상황, 시민의 생활실태,
퇴학생의 속출등을 지적)
- 방대한 예산으로 중앙국민학교를 신축한다는 것은 목포시의 실정을 무시하는 것이요, 뿌리없는 나무에서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만일 통과 시킨다면 내년 예산심의시나 결산심의시, 일대 차란을 초래할 것이며, 죽는 것보다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이니 금년만큼은 보류하고 명년에는 완수하도록 하자 김영완 의원의 동의에 첨가

◇김 남 진 의원

- 3대 의무의 하나인 교육행정은 확고부동해야 할 것이며, 균등적인 교육의 발전이 있어야 될 것이다.
- 전시라 하나 일면 전쟁, 일면 건설해야 할 현하 교육예산의 13억중에서 절약해서라도 중앙교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의장 유 정 두

- 의원의 동의에 7청이 없으므로 정식 폐기 되었음을 선언
- 폐기선언이 있자 의장과 의원간에 회의 진행에 대(기록 누락)

◇의장 유 정 두

- 휴회 선언하다. (오후 4시 28분)

- 속회 선언하다. (오후 4시 33분)

- 의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제로써 상정할 것인가 제차 물어 보겠음.

- 문택호, 임일남, 이복주, 이문길, 김경희, 명남철 의원의 7청이 유하여 의제가 되었음.

◇이 복 주 의원

- 의제가 되었으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써 중앙교 신축에 관하여 결정을 짓자 동의하다.

- 재청이 있어 표결결과 가결되다.

◇의장 유 정 두

- 감표위원회에 김영완, 김남진 의원을 지명

※ 개표상황(시표는 건, 부로 구별)

구별	득표수	비 고
건	10	중앙교 신영비 통과
부	8	
계	18	

◇김 남 진 의원

- 단기4286(1953)년도 교육위원회 예산을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이 있었다.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음

◇이 복 주 의원

- 교육청 사무 감사시 회계를 보았는데 국민학교에 갔다는 돈이 영수증은 있으나 실제로는 가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시간 여유를 주어 심의할 것을 개의회하다.

- 재청이 있었다.

◇김 삼 성 의원

- 내무위원회에서 불과 5천여만원 밖에 삭감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다소의 삭감은 사무상 지장과 세입확보에만 지장이 있다는 시장의 말과 교육감으로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사친회비는 월레비에 지나지 않는다 하니 차라리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재개의

◇의장 유 정 두

- 재개의에 재청없으면 폐기하겠음
- 의원의 개의회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9명중 가 3, 부 1, 기 14로 부결
-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9명중 가 13, 기5로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에 김삼성, 이복주 의원을 지명

◇의장 유 정 두

- 산회 선언하다.

(오후 6시 1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4286(1953)년 4월 10일

의장 : 유 정 두

의원 : 김 삼 성

” : 이 복 주

작성자 서기 천 세 봉

제16회 목포시의회 제2차 회의록

1. 일 시:단기4286(1953)년 4월 11일 오전 10시
2. 장 소:의회 의사당
3. 개회성립:
 - 1) 참석의원:16명
유정두, 이복주, 명남철, 김삼성, 김남진, 이재홍, 진복춘, 임일남, 김경현,
이문길, 정응표, 김길환, 김경희, 박찬규, 김자흥, 오세일, 김영완 의원
 - 2) 불참의원:5명
이소규, 문택호, 김팔용, 박찬규, 김채용 의원

4. 의사일정

5. 보고사항

6. 개회선언

의장 유 정 두

(오전 10시)

- 1) 개 회 식
- 2) 국민의례
- 3) 의장인사
- 4) 폐 회 사

◇김 남 진 의원

- 군경원호외의 사무는 사무 감사의결 관멸된 결과에 의하면 지방 실정에 맞지 않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도록 중앙 각 요로에 건의할 것을 동의 (재청, 3청) 성안

◇김 영 완 의원

- 이 문제는 중대하고 지방에 국한한 현실이므로 전후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로 돌아간다.

◇이 복 주 의원

- 군경원호회는 사회단체이며, 우리 목포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운영자가 나빠서 건의한 것도 좋으나 지방적으로 해결하자.

◇김 경 현 의원

- 이는 지방적으로 해결 못한다 하더라도 재향군인을 위하여 임명된 자들의 정신을 본다면 묵인할 수 없으며, 의회의 감시하에서 사업을 하도록 건의할 것을 동의에 참가

◇정 응 표 의원

- 군경원호회의 작년도의 운영상황을 본다면 참사는 분회장의 결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포대 처리 등 실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도분회장과 시분회장에게 간분신분 등에 관하여 건의 수정함과 동시에 중앙당국에 건의하려면 법률적인 조항이 필요함에 전문위원 5명 정도를 의장님이 선임하여 중앙요로에 건의할 것을 동의에 참가 (재청, 3청)

◇의장 유 정 두

- 재석의원 12명 중 11표로 가결. 전문위원은 의원3명

◇김 영 완 의원

-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근본적 숫자 파악이 필요하므로 당시 인구조사를 시의회, 방공단, 동, 경찰서, 시청 합동하여 일제 조사할 것을 긴급동의

◇의장 유 정 두

- 본 건에 대하여서는 착수하려면 막대한 인원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집행부에 일임하여 필요성에 비추어 실시하도록 하자

- 단기4285(1952)년도 교육청 개정예산안의 심의를 바람

◇이 재 흥 의원

- 본 청 개정예산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3명 중 9표로 가결

◇정 응 표 의원

- 지방 자치법을 본다면, 현재 시청 건설과에서 하는 일은 대단한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자치법을 본다면 부역 또는 현금을 징수하게 되면 의회의 의결은 물론이러니와 공평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호당 평균 40환을 징수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를 즉시 반환하고 징수를 중지할 것을 긴급동의

◇임 일 남 의원

- 지방자치법 제119조를 무시한 것이며, 평균 43씩을 징수하여 사후 승인을 얻으려는 것이니 정식으로 의회 의결을 얻어 부과하도록 동의에 참가(재청)

◇김 남 진 의원

- 전국적으로 치도를 실시 또는 검사의 일자가 없음에 부역을 시켰다고 하였는데 평균 43환씩의 현금을 징수함은 우리 21명의 의원을 속인 것인바, 건설과장님의 책임을 추궁할 것을 동의에 참가하여 개의

◇의장 유 정 두

- 검사 일자까지 치도가 못되면 보조 등에 지장이 막심함에 우리의회에서는 묵인 정도로 하였던 것을 지금은 기일도 넘고 하였으니 금년 추기에 하는 것이 어떠하며, 하더라도 단기4286(1953)년도 예산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에 현재 43씩 징수한 것은 반환하고 책임자에게 건의하여 시정하도록 하자

◇진 복 춘 의원

- 이것은 나의 의견인데 원래 부역이라 함은 본인이 나와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들이 못 나오게 되므로 타인을 사용하라는 임금으로써 징수하는 모양이다.

◇건설과장 남 기 인

- 전반 동회장 회의 석상에서 각기 부역을 하도록 하였는데 동회장의 말씀이 전원 출역은 곤란함에 현금을 각출하여 인부와 자갈 등을 구입 사용케 하자는 의도였다.

◇의장 유 정 두

- 현재 징수약은 반환을 하는 동시에 책임자에게 책임 추궁을 하자는데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2명 중 11표로 가결

- 별지와 여히 만호동 뒷골목 하수도 설치에 관한 진정서를 사무 당국에서 낭독을 바람.

◇서기 박 찬 대

- 별지와 여한 진정서를 낭독 하였음

◇김 경 현 의원

- 이 공사는 이미 통과된 4285(1952)년도 토목비 중에서 할 것을 동의

◇정 응 표 의원

- 통과된 토목비나 신예산이나 전부가 예산이 필요하므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내무분과 위원회에 화부할 것을 개의

◇의장 유 정 두

- 개의안부터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2명 중 11표로 가결

- 어제 통과한 중앙국민학교 중축비 특별부가금에 있어서 집행부의 말에 의하면 1개당 55전으로 하면 다소의 통과된 예산에 부족액이 있고 56으로 하면 다소의 금액이 여유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어찌할까요?

◇정 응 표 의원

- 56으로 하되 다소의 금액은 집행부에서 적절히 하도록 하자

◇교육감 신 현 중

- 이번 예산 통과는 대단히 감사하다.

앞으로 사친회비 이외의 임시회비 들은 일체 없으며, 6학년만은 시험지 인쇄대등이 있는데 이것은 최소로 할 것이며, 임시회비 징수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김 삼 성 의원

- 선생의 송별금 등으로 아동을 집으로 보내는 예가 있는데 이것을 학교 당국에서 적절히 할 수 없는가? 만일에 있다면 서신으로 하여 주기 바람

◇임 일 남 의원

- 사친회비를 안 낸다고 하여서 퇴학처분을 하는 예가 있는 모양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람

◇교육감 신 현 중

- 앞으로 그런 예가 없도록 할 것이며, 부득이한 형편이 있다면 서신으로 연락하겠다.

◇임 일 남 의원

- 호별세 11등까지는 절반씩을 부과하고 그이상은 11등 이하의 부족액을 부과하도록 동의

◇의장 유 정 두

- 동의안의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3명 중 9표로 가결

◇명 남 철 의원

- 전반 회의때 지명되었던 용당도선장 실지 조사를 한 바 시의예산 수립은 무리다. 그리고 모타 구입한다는 예산과 모타기를 팔아서 다른 큰배를 구입 할 것과 선원의 항해 수당으로써 월액 6천환을 지불한 모양인데 번영회에 건의하여 만환으로 인상할 것을 동의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3명 중 5표로 부결

◇임 일 남 의원

- 춘궁기를 앞두고 민생고가 일익 곤란한데 죽교4구동에 동사무소를 이사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점은 현실에 비추어 부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 응 표 의원

- 이런 점은 집행부에서 잘 조사하여 지방 실정에 맞도록 하여 주기 바람

◇의장 유 정 두

- 회의록 서명에 임일남, 정응표 의원을 지명

- 폐회 선언하다.

(오후 2시)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1953(4286)년 4월 11일

의장 : 유 정 두

의원 : 임 일 남

” : 정 응 표

작성자 서기 : 양 판 남

제16회 목포시의회 속기록

◇의장 유 정 두

-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월 11일 오전 11시 10분)

◇김 남 진 의원

- 우리는 항상 지방 실정에 부합된 일을 하여야 한다.
군경원호회 작년도 사무 감사 결과를 번다면 1억환의 돈을 움직이기 위하여 30여명의 직원과 2할 정도의 사업비 등은 부당하온 바 지방자치 단체에 일임하도록 대통령각하, 국회의장, 사회부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제출할 것을 긴급동의(재청,3청) 성안

◇김 영 완 의원

- 이 문제는 중대한 것임에 이런 점이 전국적으로 있다면 별 문제 이나 지방에 국한된 문제이므로 전후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에 가까운 바 사무 감사 결과를 조항별로 말씀하기바람

◇김 남 진 의원

- 전국적으로 동일한 실정이다.

◇이 복 주 의원

- 군경원호회는 사회단체이므로 우리 목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운영 자체가 나쁘다. 그러므로 건의하는 것도 좋으나 지방적으로 해결하자

◇김 경 현 의원

- 지방적으로 해결 못한다 하더라도 재향군인을 위하여 임명된 자들의 정신을 볼 때에 우리로서 묵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단체의 해산보다도 의회의 감시하에서 사업을 하도록 건의할 것을 동의에 참가함

◇정 응 표 의원

- 군경원호회의 작년도에 마포 처분의 경로가 목포시 분회장의 승인없이

처리했고 물품 처리에 있어서 실가하였으며, 참사는 분회장의 결재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것 등을 도 분회장과 목포시 분회장에게 건의하여서 수정함과 동시에 김남진 의원 말씀과 여히 중앙에 건의하게 되면 법률적인 수정이 필요한바 분회장을 제외한 간부, 산분 등에 관하여 전문위원회를 조직하여 중앙 기타에 건의할 것을 동의에 첨가

- 재청에 이어 3청이 있었다.

위원은 5명 정도와 위원 선거는 의장에게 일임함

- 재석의원 13명 중 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정 응 표 의원

- 지방자치 행정법을 본다면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전반에 건설과에서 국도, 시도를 치도하기 위하여 부역을 시키겠다고 하여 던바 오늘날 보면 시내 매호 평균 43환씩을 받고 있는데, 지방 자치법에는 금액을 징수하게 되면 공평은 물론이거니와 의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액을 징수하였던 모양인데 이를 반환하고 징수를 중지할 것을 긴급동의 합니다.

◇임 일 남 의원

- 지방자치법 제119조를 무시한 것입니다.

전반 의회 때 수속상 복잡하다 하여 부역 정도로 하겠다 하였는데 지금에 봐서 번지나 중심지나 동일하게 42환씩을 받고 결국은 사후 승인을 얻으려는 것이므로 이것은 부당한 바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다시 부과하도록 동의에 첨가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의원 있음)

◇김 남 진 의원

- 건설과장님의 말씀이 전국적으로 치도를 실시 또는 검사가 있음에 조속한 시일내에 착수하여 부역을 시키겠다고 하였는데 43환이란 현금을 징수함은 우리 21명의 의원을 속이는 것이니 건설과장님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동의에 첨가하여 개의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있는 바와 여히 금품을 징수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또한 금반에 중앙에서 검사가 오므로 장차의 보조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에 검사일까지는 일을 하여야 하겠다고 하여서 우리 의회에서 묵인된 정도로 하였던 것입니다.

- 현재 징수액은 반환을 하고 동시에 책임자에게 책임추궁을 하자는데 가부를 묻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1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 별지와 여한 진정서가 들어 왔는데 사무 당국으로부터 낭독이 있겠습니까.

◇서기 박 찬 대

- 만호동 뒷골목 하수도 설치에 관한 진정서를 낭독하였습니다.

(내용은 별지 참조)

◇김 경 현 의원

- 이 진정서 처리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이미 통과된 단기4286(1953)년도 예산의 토목비 중에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 응 표 의원

- 토목비 중에서도, 또는 신예산에서도 전부가 예산이 필요하므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서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개의회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개의회안부터 가부를 묻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1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 어제 통과한 중앙국민학교 증축비 특별부과금에 있어서 1개당 55전으로 하면 본예산에서 다소의 부족액이 있고 56전으로 하면 다소의 여유액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어찌할까요?

◇정 응 표 의원

- 56점으로 하여서 다소의 여유금은 적절히 집행부에서 하도록 합시다

◇교육감 신 현 중

- 이번 예산을 통과해 주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친회비 이외의 임시회비 등은 일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6학년생들은 시험지 인쇄대 등이 있는데 이것은 미리 알아 주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의 액으로 할 것이며, 임시회비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김 삼 성 의원

- 그리고 송별금 등을 가져오라고 하여서 아동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예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별로 적당히 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면 서신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 일 남 의원

- 사친회비를 내지 않는다 하여서 퇴학을 당하는 아동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신 현 중

-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며, 전별금의 부득이한 형편이 있다면 서신으로 하겠습니다.

◇임 일 남 의원

- 호별세의 등급 11등급까지는 절반씩을 부과하고 그 이상은 11등 이하의 부족액을 부과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동의

◇의장 유 정 두

- 동의안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명 남 철 의원

- 전반 의회 때에 지명되었던 용당 도선장을 실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로부터의 예산 수립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모타를 구입한다는 예산과 모타의 기계를 팔아서 다른 큰 모타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원들의 향해 수당이라 하여 월 6천환을 주고 있는 모양인데 번영회에 건의하여 만환으로 인상하여 주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5표로서 부결되었습니다.

◇임 일 남 의원

- 춘궁기를 앞두고 민생고는 일익 곤란해져 가는데 죽교 4구동에서는 동사무소를 이전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점은 현실에 비추어 부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 응 표 의원

- 이러한 일은 집행부에서 잘 조사하여 지방 실정에 맞도록 하여 주십시오.

◇의장 유 정 두

- 단기 4286(1953)년도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노력할 것은 지방실정에 맞도록 예산 그대로 집행할 것이며, 집행부로서는 예산 내에서 가장 유효적절하게 운영집행할 것이며, 절약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중대한 1년간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폐회)